

공 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 - 399호

**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
위한 공람(열람)공고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호(2008.02.05.)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4호(2023.12.14.)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북아현3구역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지면 고시되고, 서대문구고시 제2011-54호(2011.09.06.)로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북아현동 3-66번지 일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계 서류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실시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공 고 일 : 2024.03.06.(수)
2. 공람기간 : 2024.03.07.(목) ~ 2024.03.20.(수)
3. 공람장소
 -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사무실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, 제3별관 6층)
 -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5, 2층)
4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내용
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-66번지 일대
 - 시행면적 : 272,481.8㎡
 - 다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- 명 칭 :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흥열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5, 2층
 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
 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1년 9월 1일
 - 바.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
 - 서울특별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북아현3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지면 고시(2022-186호, 2022.04.21.)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,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정비사업비 변경(820,734,000,000원 → 3,362,352,000,000원) 및 사업시행계획 전체 변경

5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열람내용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명 칭 :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흥열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5, 2층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(재개발사업)
- 명 칭 :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다. 사업예정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-66번지 일대(272,481.8㎡)

6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7. 의견제출 :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출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제출장소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(☎02-330-1610)
- 제출기한 : 2024.03.20.(수) 18:00까지

※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(기관) 협의 결과, 공람의견 결과 및 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